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0년 3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가. 개정이유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9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변경 및 삭제함(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 삭제(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1)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삭제(안 제17조)
-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삭제(안 제18조)
-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규정 삭제(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전체적인 개정의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99년도에 실시한 조례정비로서 상위법에 중복되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분뇨수집을 분뇨 등 수집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관련법 근거를 개정된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에 근거한 개정안이며, 제5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제3항의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부과 명시근거를 법 제58조제2

항제6호의 근거로 개정하고, 제11조(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제2항 내용중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를 영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과 제18조의 제2항 그리고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의 삭제는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삭제된 내용으로 삭제하게 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2000. 2. 26.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변경 및 삭제함(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다.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 삭제(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1)

라.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삭제(안 제17조)

마.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삭제(안 제18조)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일부규정 삭제(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동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을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로 하고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정화조”를 “단독 정화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법 제58조제1항제5호”를 “법 제58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분뇨수집·운반업자”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를 “영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고, 동항 관련 별표1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를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분뇨수집·운반업자”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항 관련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안)
<p>②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p> <p>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 ~ 제16조 (생략)</p> <p>제1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별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p> <p>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p> <p>① (생략)</p> <p>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생략)</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 ③ (생략)</p> <p>④별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⑤ ~ ⑨ (생략)</p>	<p>②..... 별 제27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단독정화조</p> <p>3. 오수처리시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p> <p>제13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삭제)</p> <p>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제19조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별표 1]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분뇨수집 ·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기술 능력	분뇨의 수집 ·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 ·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정화조의 청소업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사 무 실	전용면적 : 15㎡ 이상	전용면적 : 15㎡ 이상
차 량	흡인식차량의 합계 : 3,6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 흡인식차량의 합계 : 30,0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 오토분봉용 화물차 1대 이상
차 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대당) - 5톤 미만 : 13㎡ - 5톤 이상 ~ 10톤 미만 : 26㎡ - 10톤 이상 : 36㎡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대당) - 5톤 미만 : 13㎡ - 5톤 이상 ~ 10톤 미만 : 26㎡ - 10톤 이상 : 36㎡
신 고 용 전 화	2대 이상	2대 이상
기 타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가. 오수정화시설 BOD, SS(mg/ℓ) (1) 1일 처리용량 100m ³ 미만 : 80초과 (2) 1일 처리용량 100 ~ 200m ³ 미만 : 60초과 (3)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 40초과 (4) 골프장 : 10초과	10 20 50 50	20 5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합병정화조 BOD, SS(mg/ℓ) (1) 처리대상인원 50인용 이하 : 20초과 (2) 처리대상인원 51 ~ 100인용 이하 : 20초과 (3) 처리대상인원 101인용 이상 : 20초과	10 20 50	20 50 100	50 100 100	100 100 100
다. 단독정화조 BOD 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 미만	10 20	20 50	50 100	100 100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BOD, SS 500mg/ℓ 초과	20	50	100	100
3. 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100
나. 합병정화조의 미신고자	10	20	30	50
다. 단독정화조의 미신고자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사용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사용	5	10	20	30
다. 단독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20 50 100	40 50 100	60 50 100	100 50 100
마.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30	50
5. 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 처리용량이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이 200m ³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100
나. 합병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0	20	30	50
다.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라.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5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마. 축산폐수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100	70 100	80 100	100 100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1)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100
7.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기능이 정상적 유지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관막힘, 오수의 역류 또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30	40 50	60 100	100 100
(2) 합병정화조	5	10	20	3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4) 축산폐수처리시설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20 30	40 50	60 10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나. 방류수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20 40	30 60	5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5 10	10 20	20 30	30 50
(3)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20 40	30 60	50 100
(4)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분기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30	40 50	60 100	100 100
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연 1회 이상) (가)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합병정화조(연 1회 이상)	30	50	70	100
(3) 단독정화조(연 1회 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1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500인 미만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10 30 50	20 50 100	50 70 100	100 100 100
(4) 축산폐수처리시설(연 1회 이상)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의 배출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0	20	30	50
마. 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30	40 50	60 70	10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합병정화조	10	20	30	50
(3) 단독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4) 축산폐수배출시설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20 30	40 50	60 100	100 100
(5) 간이축산폐수정화조	10	20	30	50
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8.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50	70	100	100
9.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11.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50 70	70 100	100 100
1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20 50	50 100	70 100	100 100
13.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 분뇨수집·운반업자 (2) 정화조청소업자,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	30 50	60 100	100 100	100 100
14.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 과 금 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15.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100	100	100
17.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8.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30	50	100	100
19.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제외 (1) 기술관리인 (2) 분뇨처리담당자	20 50	40 70	60 100	100 100
20.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21.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2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23.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주)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